

재고해 볼 텔레비전 보도

서울신문 논설위원

송정숙

인권유린이 신속과 유익의 그늘에서 자행

프앙카레는 「고체의 자(척)」로 사물을 재는 일의 한계를 회의를 하는 것으로부터 사유에 접근하고 있다. 성문화된 규제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일이란 프앙카레의 「고체의 자에 대한 회의」보다도 더 부질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법을 세법을 이용하여 이른 바 절세를 하듯 이용하려고 한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보도에서 인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심의기분을 피해가는 방법의 시각에서만 본다면 「고체의 자」만 피해가면 그뿐이다. 이 같은 일은 매체의 종사자가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 하는 것에 중요함이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82년 2월 중의 뉴스센터에서는 기획취재로 「여성이 남성으로 바뀔 수 있나」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다. 이 프로그램이 표방하고 있는 것은 불행을 당한 어느 집안을 위해 교수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가를 묘사하고 있었고 그 묘사의 목적은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는데 있었다. 구성에는 현장감과 박진력이 있으며 상당한 품을 들인 프로그램이므로 당연히 평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반론하기도 조금 힘들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프로 안에 인권의 침해요소가 얼마든지 숨겨져 있기도 한 것이다.

충북 보은에 사는 이 딱한 4자매는 모두가 양성을 소유하고 있는 중성이다. 의료시술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태세에 있으므로 그들은 남성이 될지, 여성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여성으로 자라왔다. 그리고 그 중 만이에게 시술한 내용이 과다 분비된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이었으므로 다분히 여성을 도로 찾는 쪽으로 결말이 날 것 같다. 이런 그들을 찾아가 집의 위치를 상세히 보여주고 뒷방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 수치스러워 하는 정황까지 친절히 묘사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의사를 마이크 앞에 불러내어 비록 전문용어이긴 하지만 성기능의 정도며 어느 부위를 그려 보여 주어가며 심층묘사했다.

만 약에 이 보도의 주인공들이 여성을 회복하여 「4 자매」가 된다면 이들에게 혼담이 생길 때 이 심층보도는 아무런 장애도 주지 않을까? 그것은 그때 일이고 우선은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궁지에 몰린 형편을 모면하게 해 주는 일이 급했다고 이야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날의 프로그램은 선의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기에 알맞도록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 뭔지 괴기한 뒷맛이 남는 접근하기 불유쾌한 분위기를 오히려 주고 있었다. 이것은 필자가 개인적으로 갖게 된 느낌을 일방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모니터와 평가기능을 맡은 한 집단에서도 확인된 일이 다.

사실을 사실로 보도하는 것이 조금 가혹하더라도 그 내용이 지니는 보편타당성 때문에 교육이나 계도의 기능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도 있기는 하다. 가령 범죄가 저질러진 피빛 현장 같은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런 경우조차도 그 순기능과 역기능은 늘 상반된 의견으로 대두된다. 그러나 「보은의 4 자매」의 경우에는 그들의 특수성에서 유추되는 보편적 의미도 별로 없었다. 4 천만명 중 4 백명 정도의 예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예에 불과했다. 결국 이상한 일에 대한 신기한 관심일 뿐이었다. 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끄러워 하는 가족을 카메라 앞에 나서게 하고 그걸 빌미로 색채도 선명하고 모양도 실감나는 그림들을 보여주며 보도를 한 것이다. 당사자들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의로 행해진 일인 것이다. 그러나 가난하여 어려움에 처한 그 가족에게 「도움」을 약속했다면 참고 나와 주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음핵이 남자의 성기처럼 길어지고 커지고 그 다음 여성으로서 대음순이 있는데 그것이 점점 붙어가지고 그것이 남자의 외성기로 보는 것 같은 현상을 나타내게 해서……』

이런 표현들로 서술된 주인공이 의료시술로 여성을 회복한다고 하기로서니 결혼이나 기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일들은 성문화된 인권의 규제조항만을 적용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수 있다. 몇 가지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다.

「비록 사실보도라 할지라도 잔인하거나 비참한 표현은 피하며 특히 미성년자의 자살적인 범죄 의 보도는 신중을 기한다」 (방송심의규정 10 조)

「시청취자에게 충격이나 불안감을 주는 내용이나 표현을 피하고 특히 경제질서에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신중히 다룬다」 (동 21 조) 「육체나 정신상 흠함 또는 사회적으로 불우한 사람을 다룰 때에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며 직업의 귀천을 긍정적으로 다루지 아니한다」 (동 44 조)

이들 조항들은 이를테면 프앙카레가 말하는 「고체의 자(척)」와 같다. 이종의 어느 자를 갖다가 댄다 하더라도 비켜날 수가 있게 되어있는 보도였으므로 규정에 어긋난다고 제재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민첩한 술레처럼 요리조리 잘 빠져 나가 게임만 성공시키면 되는 것이 보도일 수는 없다. 「고체의 자」가 지닌 한계성에 회의하고, 보다 본질적인 곳에서 사유를 출발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면 인권의 유린은 신속이라든가 유익의 그늘에서 얼마든지 자행될 수 있다. 더구나 사건의 당사자는 더 말할 것 없고 그 가족이나 이웃까지도 죄없이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고 만다.

어떤 종류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유난히 낮을 가리는 편인 것이 우리의 관습이기도 하다. 가족중의 소아마비나 지진아가 있으면 골방에 가둬두고라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런 자손을 둔 부모는 죄인처럼 회한하며 음울해져 버린다. 어떻게든 밝은 방법으로 해결의 길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그런 굴절된 눈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굴절현상을 시정하는 노력을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언론매체들이 말아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명제이다. 이런 명제가 중요하다는 것과, 실제로 이런 종류의 피해를 입을지도 모를 개인의 불이익을 함부로 보도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시청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굴절되고 왜곡된 사고방식을 고치도록 제의하고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상처가 깊어지지 않게 배려해야 한다.

이런 기본태도가 「고체의 자」로서는 젤 수 없는 본질적인 선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모든 일은 사람들의 하기 나름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무엇인가 빙자하여 흥미본위의 선정적인 것을 쫓으려고 작심한다면 막을 재간이 없다. 지난해 5월 서해안 앞바다에서 상어에 물려 해녀가 한 사람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지적이 있었던 일이지만 이 사건직후의 TV 보도는 우리를 아연하게 했다. 눈을 번히 뜨고 아내가 상어 입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겪어야 했던 남편이 아내의 장례도 미처 못치렀을 시간에 TV 방송스튜디오로 불려나왔다. 불려나와서 그 끔찍했던 경험을 보도진행자가 시키는대로 술회했다. 워낙 생생한 경험자를 데려나와 거의 식지 않은

상태에서 뉴스를 전할 수 있다는 흥분 때문이었는지 보도진행인도 다소 양분되어 있었다. 그때 인상적이던 일은 피해자의 남편인 임모씨가 거의 무표정한 얼굴로 극한의 상황을 저항없이 찰찰 진술하면 모습이었다. 그것은 「진술」 이랄 수 밖에 없을 지경으로 전혀 저항없이 술회되었다.

그토록 불행을 당한 사람이 아무리 경황없이 당황한 형편이라도 『나오라면 나와야 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 그렇게 나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안스런 느낌을 그는 주고 있었다. 실물의 상어 이빨을 눈앞에 보여 줘 가며 아내가 물려가면 장면을 상기시키고 그때 어쨌느냐고 물어댔다. 이 문제와 유사한 질문에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듯 술술 대답하고 있는 무표정한 출연자의 얼굴은 우리들 가슴 아프게 했다.

몇 개의 여과장치가 필요

일선을 뛰는 기자나 직접 제작부서를 맡고 있는 실무자에게는 그들을 등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추진력이 있다. 시간과 일에 쫓기면서 관성의 운동법칙 같은 것에 떠밀리게 마련이다. 그래서 경찰 출입기자들에게 웃지 못할 일화들이 따라 다닌다. 죽어가는 취재원을 매일 들여다보며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그때의 그 기자의 관심은 『아직도 안 죽었나?』 이다. 말하자면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무 이유없이, 부모죽인 철천지원수도 아니고 자신의 출세를 방해하는 불구제천의 이가 갈리는 라이벌도 아닌 생판 관계없는 선의의 남을 단지 보도를 빨리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인 것이다.

이렇게 일 자체에 떠밀려 달리고 있는 일선 기자들이나 보도기자들의 급한 숨을 돌려주고 거치른 가지들을 다스려주지 위해서는 몇 개의 과장치가 필요하다. 중간 데스크나 스탭들 사전심의 기구들은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보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신속성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장치들이 있더라도 자칫하면 뛰어넘어 무작정 달려가게 마련이다. 오랜 숙련공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던 손끝에서도 이상한 것이 있으면 탁탁 걸리게 된다. 일일이 확인대조를 하지 않아도 손끝이 용서하지 않아서 흠결이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경륜의 중간 간부들이 요소요소에 있어서 사전에 걸러지는 그런 체제가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보도프로그램은 강한 가학의 채찍을 쥐어

보도방송에서 명예권 보호를 위해 규정한 관계조문에서는 공재하지 않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17 조).

㉔ 미성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및 욕을 당한 부녀자가 그 본인으로 추측될 수 있는 정도의 성명 주소 사진 등

㉕ 범죄 등 불명예스런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거나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이름

㉖ 피의자나 피고인의 친족 또는 보호자의 인적 사항

㉗ 단순히 사건의 혐의에 불과한 용의자의 인적사항 이상의 규정을 준거로 하여 어긋났다고 보여지는 보도의 예도 적지 않다.

지난해 12 월의 금복주사건 보도과정에서는 자수한 김일출의 부인의 인적사항이 가려짐없이 드러났다. 어느 시, 어느 동, 몇 번지에 사는 부인이 현상금을 바라고 신고했음을 밝혔고 그것으로 범인도 잡고 일당도 검거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피의자의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백하게 위배한 것은 물론 수사에 협조한 시민의 신분을 노출시켜 보복이나 주위의 위협을 당할 위험에서도 보호 받지 못하게 했다. 이런 보도도 당연히 걸러졌어야 할 프로였다. 20 대 청년 3 명이 10 대 소녀 2 명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욕을 보인 사건의 보도도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였다. 군 이름, 면 이름, 나이, 본인이름이 명백히 드러나 지역사회에서는 그가 누구인줄 금방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었다.

소녀들이 길가에 이유없이 태워주는 차를 타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런 보도는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남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명백하게 약정이 될 누군가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이용될 수는 없다. 이런 일에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항의를 한다면 매체측에서는 방어할 수단이 없을 것이 다. 소녀들이 욕을 당했다는 일처럼 무서운 피해는 없다. 이 무서움에 대한 인식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기울여 친다면 이런 보도는

걸려질 수 있다. 심의규정 중 인권에 관한 ㉠㉡㉢㉣같은 명문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부당하게 피해 입을 그들 소녀들이 미래에까지 이어질 피해로 인한 상처는 가슴 아픈 일이다. 그걸 가려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고체의 자」를 넘어서는 보도의 윤리란 이런 것을 뜻한다.

아들이 부부싸움하면 아버지를 흥기로 질러 중태에 빠뜨린 사건의 보도가 있었다. 아들은 10 대였다. 이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도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누가 보아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났다.

옛날에는 패륜아가 생기면 세동네를 돌리며 조리돌림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하고서 동네에서 살 수 없도록 타곳으로 내쫓았다. 이유가 어쨌든 아들이 아버지에게 충기를 휘두른 일은 패륜이므로 옛날 같으면 조리돌림하여 내쫓을 일이긴 하다. 그러나 현대의 법정신을 모든 사회악을 법의 심판으로 다스려지고 법의 심판이 끝나면 사회를 정상복귀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미성년의 경우에는 덜 성숙한 사고에서 저질러진 일이므로 가능하면 잘 교정하여 온전한 시민으로 성숙시켜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의지다. 옛날의 조리돌림은 없어졌지만 현대의 매스미디어는 보다 큰 규모의 조리돌림과 같다. 한 개인의 과오를 수백만 배로 복사해서 소문내어 그 수모가 깊이 새겨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법 앞에 평등한 인권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정신의 이상인데도 보이지 않는 제재로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보다 강하게 가학의 채찍을 쥐고 있는 것으로 보도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건보도도 있었다. K 군 Y 면에 있는 T 중학교 전 동창회장 45 살 I 씨가 공갈혐의로, 현 육성회장 50 살 S 모씨가 모욕죄로 각각 구속되었다는 사건이었다. I 씨는 동창회장으로 있던 79 년 4 월부터 80 년 11 월까지 사이에 해당학교의 당시의 교감 직무대리로 있던 J 씨를 협박하여 돈을 울거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J 씨가 자격증이 없다는 것을 말고 그것을 폭로하겠다고 공갈 협박을 했더라는 이야기. 학교를 둘러싼 어른들의 치사찬란한 파렴치가 드러난 불유쾌한 사건이었다. 한쪽이 고소하고 그것을 무고로 맞고소한 소동인 듯한데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특정학교의 위치와 이름이 모두 드러나게 보도하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학교의 명예」라는 말을 애용한다. 자라는 청소년이 그들의 자부심을 만족해가며 집단으로 보람과 의미를 나누어 갖는 이 말 「학교의 명예」는 아주 오래오래 간다. 70 이 넘을 원로거물과 50 대에 이른 장년의 현역 이 정답게 악수하며 「학교의 명예」를 즐기는 모습을 매스컴, 특히 잡지화보가 제일 고상하게 즐기는 소재 다. 이렇게 수천 수만 명의 재학생, 졸업생에서 영향을 주는 「학교의 명예」를 파렴치한 어른 몇몇이 저희끼리 저지른 치사한 극을 공개함으로 해서 더럽힌다면 얼마나 부당한 일일까. 그것이 전체 학생에게 주는 교육적 역효과도 클 것이다. 특정학교 이름을 사건과 관계없는 채 함부로 드러내는 잘못된 보도가 제일 자주 저지르는 과오중의 하나이다.

이윤상 군 사건의 보도과정에서 범인 주영형 교사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두 소녀가 다닌 여학교의 이름이 C 나 D 같은 머릿줄자로 보도되었다. 비록 머릿글자일망정 어느 학교인지 짐작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았기 때문인지 지나는 사람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던 학생들이 많이 곤욕스러웠다는 후문이 있었다. 딸들이 뺏지 달고 다니기가 괴롭도록 부끄럽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듣고 부모는 부모대로 몹시 고통스러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분위기가 심어주는 사회적 영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보도업무라고 하는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과정에서 끊임없이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사유를 거듭하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 성균관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

□ 서울신문 문화부 차장, 동 문화부장

□ 현재 한국방송 심의위원회위원 및 서울신문논설위원